상생벤더구매론 약정서

(1차 협력기업용)

주식회사 **하나은행** 앞

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함)과 ______(이하 "1 차 협력기업"이라 함)은 1 차 협력기업에게 물품 및 용역 등(이하 "물품 등"이라 함)을 납품한 2 차 협력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1 차 협력기업이 ____년 ___월 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(기업용)(이하 "원약정서"라 함)에 추가하여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합니다.

제 1 조(목적)

이 약정은 1 차 협력기업이 은행의 「상생벤더구매론」 결제제도를 이용하여 2 차 협력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

-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"구매기업"이라 함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, 1차 협력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
- 2. "1 차 협력기업"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, 은행과 상생벤더구매론 약정(1차 협력기업용)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.
- 3. "2 차 협력기업"이라 함은 1 차 협력기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, 은행과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(2차 협력기업용)을 체결하는 기업을 말합니다.
- 4. "벤더기업"이라 함은 은행과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(벤더기업용)을 체결한 기업으로서, 2 차 협력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기업 또는 순차적으로 직전 N 차 협력기업에게 납품하는 N+1 차 협력기업을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의미합니다. 벤더기업을 구분하여 지칭할 때에는 N 차 벤더기업을 "상위 벤더기업", N+1 차 벤더기업을 "하위 벤더기업"이라 합니다.
- 5. "지급승인명세"(이하 "승인명세"라 함)라 함은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1 차 협력기업이 은행에 전송하는 구매자료를 말하며, 2차 협력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지급승인이 필요합니다.
- 6. "지급승인금액"(이하 "승인금액"이라 함)이라 함은 승인명세 상 1 차 협력기업이 2 차 협력기업에게 지급할 구매대금을 말합니다.
- 7. "결제일"이라 함은 1 차 협력기업이 구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는 일자로서, 슝인금액의 상환일을 말합니다.
- 8. "선입금"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2 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이 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할인하는 행위를 말하며, 제 9호의 벤더입금을 포함하여 지칭할 때에는 "선입금 듕"이라 합니다.
- 9. "벤더입금"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2 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이 선입금한 대금을 벤더기업 또는 하위 벤더기업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- 10. "벤더슝인명세"라 함은 하위 벤더기업에게 납품대금 지급을 위해 2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이 은행에 전송하는 구매자료를 말하며, 하위 벤더기업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은행의 벤더슝인이 필요합니다.
- 11. "기업인터넷뱅킹"이라 함은 HanaCBS Light, HanaCBS, BiCNET 등을 말합니다.

제 3 조(승인명세의 전송)

승인명세의 전송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합니다.

- 1. 슛인명세는 경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물품 등의 납품대금 결제 용도로만 전송할 수 있습니다.
- 2. 승인명세의 항목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- 3. 슝인명세의 금액은 최소 일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.
- 4. 승인명세의 전송 시 1 차 협력기업의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(상생일반구매론에 의한 지급승인명세를 포함합니다)을 선택하여야 합니다.
- 5. 승인명세 상 결제일은 선택한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.

- 6. 승인명세의 전송은 기업인터넷뱅킹, 펌뱅킹서비스 등 전자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 관리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"지급승인명세등록신청서" 및 해당 승인명세를 파일로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7. 은행은 지급승인이 있는 해당 명세를 2 차 협력기업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.

제 4 조(지급승인)

- ① 은행은 1 차 협력기업의 슝인명세에 대하여 2 차 협력기업을 대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슝인을 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은행이 지급승인을 하는 때에, 은행은 1차 협력기업이 2차 협력기업에게 부담하는 대금 지급 채무를 이약정에 의해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정하며, 은행은 승인명세의 내용대로 2차 협력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
- ③ 제 2 항에 따라 은행이 채무인수하는 경우에는, 2 차 협력기업이 은행과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을 체결한 때에 지급승인에 따른 채무인수를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.
- ④ 2 차 협력기업의 포괄적 승낙은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급승인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며, 2 차 협력기업은 건별 지급승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모든 지급승인에 대하여 포괄적으로, 해당 승낙의 의사표시를 철회,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⑤ 1 차 협력기업은 은행의 지급승인으로 말미암아 2 차 협력기업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, 은행에 대하여 승인명세와 동일한 내용의 별도의 대금 지급 책임을 새로이 부담하기로 합니다.
- ⑥ 제 2 항의 지급승인이 있는 경우 은행은 상생일반구매론에 의한 지급승인에 따라 은행이 1 차 협력기업에게 부담하는 보중채무를 이행하여 이에 따라 1 차 협력기업의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은 지급승인 금액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며, 해당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(가)압류, 가처분,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.
- ⑦ 지급승인금액의 총잔액은 원 약정서의 여신(한도)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개별 지급승인은 제 3 조 제 4 호에서 선택한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.

제 5 조(슝인명세 등의 변경 및 취소)

- ① 1 차 협력기업은 은행의 지급승인이 있기 전에는 승인명세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, 지급승인 이후에는 2 차 협력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하자, 전산조작 오류, 기타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, 은행에 지급승인의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승인명세의 판매기업(2 차 협력기업) 및 승인금액은 변경할 수 없고 취소 후 새로 전송하여야 합니다.
-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슝인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.
 - 1. 2 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이 슝인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미 선입금, 벤더입금 또는 벤더슝인을 실행한 경우
 - 2. 결제일이 도래한 경우
- ③ 지급승인이 취소된 경우, 은행은 취소된 지급승인에 대하여 대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, 1 차 협력기업이 지급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2 차 협력기업의 동의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며, 지급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④ 허위매출,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를 전송하는 경우, 은행은 강제로 취소할수 있으며, 일체의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

제 6 조(지급승인의 제한)

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의 지급승인이 제한됩니다.

- 1.1차 협력기업이 이 여신 또는 은행과 약정한 다른 여신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
- 2. 1 차 협력기업에 대하여 "신용정보 관리규약"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(연체, 대위변제 . 대지급, 부도, 금융질서문란 정보 등)가 등록된 경우
- 3. 구매기업 또는 1 차 협력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, 채권은행협약, 기타 유사한 협약 등에 근거하여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
- 4. 1 차 협력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등 1 차 협력기업이 은행의 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

- 5. 지급승인으로 인하여 지급승인금액의 총잔액이 원 약정서의 여신(한도)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
- 6. 허위매출, 현금융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슝인명세를 전송하거나 기타 이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
- 7.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2 차 협력기업을 판매기업으로 하여 승인명세를 전송하는 경우
- 8. 원 약정서 제 4조(감액, 정지)에 의하여 1차 협력기업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
- 9. 슝인명세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(가)압류 등의 지급제한으로 지급보류 등록을 한 경우
- 10. 구매기업이 전송한 승인명세 상 거치기간이 설정된 경우
- 11. 매매보호거래시 해당 승인명세에 대하여 구매기업이 권리이전(인수)하지 않은 경우

제 7 조(벤더슝인)

- ① 2 차 협력기업은 벤더기업에 대하여 물품 등의 납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, 은행에 벤더슝인명세를 송부하여 자신에 대한 은행의 지급승인을 포기하고 벤더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지급승인(벤더승인)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② 은행이 벤더슝인을 하는 경우, 은행의 2 차 협력기업에 대한 지급슝인은 소멸하고, 은행은 벤더슝인금액범위 내에서 2 차 협력기업이 벤더기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 지급 채무를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보며, 은행은 벤더슝인명세의 내용대로 벤더기업에 대하여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합니다.
- ③ 제 2 항에 따라 은행이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에는, 제 4 조 제 3 항 및 제 4 항을 준용합니다. 이 경우 2 차 협력기업은 벤더기업으로, 지급승인은 벤더승인으로 봅니다.
- ④ 벤더승인은 승인금액 전액에 대하여만 요청할 수 있으며, 승인금액을 분할하여 요청할 수 없습니다.
- ⑤ 은행의 벤더슝인으로 말미암아 2 차 협력기업이 벤더슝인금액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더라도 1차 협력기업의 은행에 대한 대금 지급 책임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.
- ⑥ 벤더기업은 하위 벤더기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회차에 제한 없이 벤더슝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⑦ 벤더슝인명세와 관련한 사항은 제 3 조(제 3 호 내지 제 5 호는 제외한다) 및 제 5 조를 준용하며, 이 경우 1 차 협력기업은 2차 협력기업으로, 2차 협력기업은 벤더기업으로 봅니다.

제 8 조(벤더슝인의 제한)

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의 벤더슝인이 제한됩니다.

- 1. 허위매출, 현금융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납품대금 결제용도 외의 벤더승인명세가 전송된 경우
- 2.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벤더기업을 판매기업으로 하여 벤더슝인명세를 전송하는 경우
- 3. 벤더슝인명세와 관련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(가)압류 등의 지급제한으로 지급보류 등록을 한 경우
- 4.2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이 상생벤더구매론 이용약정을 위반한 경우
- 5.1차 협력기업,2차 협력기업, 벤더기업의 요청이 있거나 은행의 여신관리 목적상 필요한 경우
- 6. 기타 제 6 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1 차 협력기업에 대하여 개별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경우

제 9 조(선입금 등)

- ① 2 차 협력기업 및 벤더기업은 지급승인 또는 벤더승인을 받은 경우 결제일 전에 제 11 조에 따른 이자를 차감하고 선입금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청하거나, 선입금 없이 결제일에 만기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② 2 차 협력기업, 벤더기업은 지급하인 또는 벤더하인을 받은 경우 결제일 전에 자신의 하위 벤더기업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(벤더입금)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③ 선입금 등은 지급승인, 벤더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결제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할 수 있되, 선입금가능일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선입금 등이 가능합니다.
- ④ 선입금 듕욘 지급슝인금액 범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최저 일만원 이상 분할신청이 가능합니다.
- ⑤ 선입금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은행은 요청에 응하기로 하되, 제 6 조 및 제 8 조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선입금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제 10 조(개별 대출의 실행)

- ① 지급승인에 따른 개별 대출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실행하기로 합니다.
 - 1. 2차 협력기업에 의한 선입금 등이 실행된 때

선입금일 또는 벤더입금일에 1 차 협력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개별 대출을 실행하여 2 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의 입금계좌로 입금합니다.

- 2. 벤더슝인이 있은 후 벤더기업에 의한 선입금 등이 실행된 때
 - 선입금일 또는 벤더입금일에 1 차 협력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개별 대출을 실행하여 벤더기업 또는 그하위 벤더기업의 입금계좌로 입금합니다.
- 3. 선입금 등 없이 만기입금하는 경우
 - 결제일에 1 차 협력기업을 채무자로 하는 당일 만기대출을 자동 실행하여 2 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의 입금계좌로 입금합니다.
- ② 개별대출의 만기일(승인명세 상 결제일과 동일합니다)은 원 약정서에서 정한 대출(한도) 약정기일을 초과할 수 있으나 약정기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제 11조(대출 이자 및 수수료)

- ① 대출이자의 계산은 원 약정서 "제 1 조 거래조건"에 따르기로 합니다.
- ② 대출 이자는 선입금 등을 요청하는 2 차 협력기업 또는 벤더기업이 부담하되, 지연배상금은 1 차 협력기업이 부담하기로 합니다. 단, 제 10 조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로서 결제일 당일 중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.
- ③ 벤더입금시에는 벤더입금 건별 벤더취급수수료를 부과하며, 벤더입금 신청시 부담주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④ 수수료 징구방법, 시기, 금액 등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기로 하며, 수수료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 본점 및 영업점 또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합니다.

제 12 조(결제계좌의 지정)

상생벤더구매론 취급을 위한 본인의 결제계좌는 아래와 같이 약정합니다. (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의 약정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)

예금주	예금주 사업자번호	계좌번호

제 13조(개별대출의 상환)

- ① 개별 대출의 상환은 개별대출금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대금으로 자동상환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합니다.
 - 1. 구매기업의 상생일반구매론에 따른 지급승인을 근거로 한 경우 승인명세 상 결제일에 구매기업을 채무자로 한 상생일반구매론을 실행하여 1 차 협력기업의 개별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
 - 2. 구매기업과 1 차 협력기업, 은행간 상생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관련 약정 및 협약이 체결되거나 상생 e-안심팩토링대출 관련 약정 및 협약이 체결되어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한 경우
 - 가. 1차 협력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인 경우(WOR 방식) 관련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 만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또는 당일만기 전자방식 외상채권대출을 실행하여 1차 협력기업의 개별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.
 - 나. 1차 협력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있는 방식인 경우(WR 방식) 관련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구매기업이 미결제하는 경우 1 차 협력기업의 개별 대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.
- ② 허위매출, 현금융통성거래 등 상거래와 무관한 승인명세에 대하여 선입금 등이 실행된 경우에는 그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.

제 14 조(압류 및 지급보류 등)

- ① 이 약정과 관련한 매출채권 또는 은행에 대한 대금 지급 채권에 대하여 (가)압류, 가처분, 체납처분 등(이하 이 조에서 "압류"라 합니다)이 송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.
 - 1.1차 협력기업을 제3채무자로 하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1차 협력기업에게 압류가 송달된 경우
 - 가. 은행의 지급승인이 있기 전인 경우, 1차 협력기업은 관련 승인명세를 전송하지 않기로 합니다.
 - 나. 은행의 지급승인이 있은 후인 경우에는 지급승인으로 인하여 은행이 해당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.

- 2. 은행에 대한 2차 협력기업의 대금 지급 채권에 대하여 은행을 제 3 채무자로 한 압류가 송달된 경우
 - 가. 은행의 지급승인이 있기 전인 경우에는 은행이 채무 인수하기 전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.
 - 나. 은행의 지급승인이 있은 후인 경우, 은행은 즉시 지급보류등록을 합니다.
- 3. 압류가 장래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1 차 협력기업은 관련 승인명세를 전송하지 않기로 합니다.
- 4. 지급보류 등록한 지급승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합니다.
 - 가. 결제일 도래시 1 차 협력기업 명의의 대출을 실행하여 은행의 미지급금 계정에 예치하기로 합니다.
 - 나. 은행의 미지급금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.
- ② 1 차 협력기업이 제 1 항 제 1 호 및 제 3 호에 위반하여 승인명세를 전송하고 은행이 압류 사실을 모르고 이 약정에 의한 거래가 실행된 경우 1차 협력기업이 변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.

제 15 조(이용시간)

① 오행 영업점을 통한거래는 요행 영업시간중 가능하며, 인터넷뱅킹을 통한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서비스 종류	평일	토요일/일요일/공휴일	
조회	24 시간	가늉	
판매기업 등록	08:00~22:00	불가	
선입금 신청	08:00~19:00	불가	
구매자료 승인/변경/취소 (당일전송 당일만기) (당일전송 익영업일만기)	08:00~22:00 08:00~15:00(EDI 14:00 7 지) 08:00~20:00(EDI 16:00 7 지)	불가	
벤더입금	08:00~19:00	불가	

-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고객이 은행에 등록한 연락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. 단, 등록된 연락처의변경 후, 은행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본점,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고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- ③ 시스템 장애복구,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
제 16 조(약정의 체결 및 변경)

- ① 1 차 협력기업은 이 약정과 관련한 자료를 은행에 성실하게 작성,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② 이 약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거나 이 약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은행, 1 차 협력기업, 2 차 협력기업 및 벤더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
- ③ 필요한 경우 은행과 1차 협력기업은 서면으로 이 약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제 17 조(면책)

- ① 제출 서류의 허위, 위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1 차 협력기업의 부담으로 하며,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.
- ② 이 약정에 따른 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 "제 15 조 (위험부담.면책조항)"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 "제 20 조(손실부담 및 면책)"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

제 18조(약정의 효력)

① 이 약정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원 약정서의 약정기한까지 유효합니다.

- ② 원 약정서에서 정한 약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은행 또는 1 차 협력기업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, 원 약정서 및 이 약정에 의한 약정기한은 최장 30 년 이내에서 1 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. 다만, 제 6 조 제 1 호 내지 제 9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연장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③ 약정기한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약정기간 내 지급승인된 승인명세에 대하여는 상환될 때까지 이 약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.
- ④ 이 약정,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및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, 다음으로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,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의 순서로 합니다.
- ⑤ 은행과 1 차 협력기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정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
제 19조(정보 제공 동의)

1 차 협력기업은 이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1 차 협력기업에 관한 기본정보 및 지급승인명세 등의 내역을 2차 협력기업에게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.

20 년 월 일

F4 +1 +134310104115131

[기사 엽뎍기업(세무사)]	
기업명 :	(인)
주 소:	

본인은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및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	1차	
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,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바 본 약정을 체결함.	협력 기업	(<u>9</u> 1)
		(인)